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755호

망우3동 474-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‘중랑구 망우3동 474-29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(모아타운)’ 지정
을 위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2(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
립)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(모아타운 관리계획) 승인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
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12월 26일
서울특별시

1.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

가. 관리지역의 명칭 : 망우3동 474-29번지 일대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

나.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
구분	위치	관리계획 요건	노후불량건축물	비고
기준	중랑구 망우3동 474-29번지 일대	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㎡ 미만일 것	노후·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	-
현황		85,584.61㎡	전체 : 367동 노후·불량 : 279동(76.0%)	-

다. 정비방향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
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

2.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

가. 관리지역의 지정

1)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

관리지역 명칭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망우3동 474-29번지 일대 모아타운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	망우3동 474-29번지 일대	-	증) 85,584.61	85,584.61	-

2)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

도면표시	명칭	결정내용	결정사유
-	망우3동 474-29번지 일대 모아타운 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)	· 위치 : 망우3동 474-29번지 일대 ·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면적 : 85,584.61㎡	노후·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·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

나. 토지이용계획(안)

1) 모아타운 토지이용계획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

구분			면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시행구 역	공동 주택 용지	소계	68,267.70	79.8	-
		A-1 사업추진구역1 (가로주택정비사업)	19,048.57	22.3	-
		A-2 사업추진구역2 (가로주택정비사업)	17,216.66	20.1	-
		A-3 사업추진구역3 (가로주택정비사업)	15,958.98	18.6	-
		A-4 사업추진구역4 (가로주택정비사업)	16,043.49	18.8	-
	정비기반 시설 등	소계	17,316.91	20.2	-
		- 도로	13,664.95	16.0	-
		B1 공원	1,584.02	1.8	-
		C1 주차장, 공공청사 (중복결정)	1,862.94	2.2	※ 기존 망우3동 주민센터 1,178.00㎡ 포함
		D1 사회복지시설	205.00	0.2	※ 망우동 479-123 (시립중앙 단기보호센터) 이전 설치
	합계		85,584.61	100.0	-

2) 사업시행구역별 토지이용계획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

구분	합계	획지	정비기반시설				잔치
			소계	도로	공원	주차장/ 공공청사	
합계	85,584.61	68,267.70	17,111.91	13,664.95	1,584.02	1,862.94	205.00
A-1	22,203.60	19,048.57	2,950.03	1,366.01	1,584.02	-	205.00
A-2	22,239.70	17,216.66	5,023.04	5,023.04	-	-	-
A-3	19,413.85	15,958.98	3,454.87	3,454.87	-	-	-
A-4	21,727.46	16,043.49	3,821.03	3,821.03	-	1,862.94	-

다. 정비기반시설 ·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안)

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신설	소로	1	A	11	국지도 로	220.6	망우동 522-4	망우동 517-19	일반도 로	-	-	겸재로61길
신설	소로	1	B	11	국지도 로	164.7	망우동 524-27	망우동 529-42	일반도 로	-	-	겸재로61길
신설	소로	1	C	10 ~11	국지도 로	267.4	망우동 520-1	망우동 503-10	일반도 로	-	-	봉우재로58길 /용마산로99길
신설	소로	2	A	8	국지도 로	108.5	망우동 529-52	망우동 520-1	일반도 로	-	-	봉우재로64길
신설	소로	2	B	8	국지도 로	102.0	망우동 523-5	망우동 524-27	일반도 로	-	-	상봉로12길
신설	소로	2	C	8	국지도 로	136.7	망우동 529-106	망우동 529-52	일반도 로	-	-	겸재로61가길
신설	중로	3	A	14	국지도 로	207.3	망우동 522-37	망우동 520-45	일반도 로	-	-	상봉로16길
신설	중로	3	B	14	국지도 로	51.3	망우동 503-10	망우동 517-1	일반도 로	-	-	봉우재로58길

-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-	소로 1-A	도시계획시설(도로) 신설	사업 시행 후 세대수 증가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일부 구역 도로 신설하여 봉우재로와 연결하고 기존 도로에서 구역 내 5m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
-	소로 1-B	도시계획시설(도로) 신설	사업 시행 후 세대수 증가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기존 도로에서 구역 내 5m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
-	소로 1-C	도시계획시설(도로) 신설	학교 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(보행 여건 개선)을 위하여 구역 내 3~5m 확폭 및 양방향 보도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
-	소로 2-A	도시계획시설(도로) 신설	대상지 변 보차혼용도로의 차량·보행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구역 내 2m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
-	소로 2-B	도시계획시설(도로) 신설	대상지 변 보차혼용도로의 차량·보행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구역 내 2m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
-	소로 2-C	도시계획시설(도로) 신설	대상지 변 양방향 차량 통행 및 보행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구역 내 4m 확폭 및 보차 분리하고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
-	소로 3-A	도시계획시설(도로) 신설	인근 면목동86-3 모아타운 개발로 인한 도로 흐름 연계 및 사업 시행 후 세대수 증가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 유지를 위해 기존 도로에서 구역 내 8m 확폭하고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
-	소로 3-B	도시계획시설(도로) 신설	봉우재로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3개 차로 확보 및 구역 내 8m 확폭하고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

2)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

구분	도면 표시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지	①	공원	어린이공원	망우동 474-11	593.0	감) 593.0	0.0	1995-05-20	햇님공원
폐지	②	공원	어린이공원	망우동 520-6	984.5	감) 984.5	0.0	1995-05-20	달동산공원
신설	①	공원	어린이공원	망우동 522-12 외	-	증) 1,584.0	1,584.0		

-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변경 내용	변경 사유
①	햇님공원	어린이공원	기존 공원 폐지	접근성 및 노후화로 인한 사용성 저하
②	달동산공원	어린이공원	기존 공원 폐지	접근성 및 노후화로 인한 사용성 저하
①	-	어린이공원	어린이 공원 신설	관리구역 내 어린이공원 2개소 폐지 후 해당 폐지 면적 이상의 어린이공원 신설하여 접근성 개선 및 이용성 확보

3)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

구분	도면 표시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②	주차장	노외주차장	망우동 529-2 외	1,178.00	증) 684.94	1,862.94	2016-12-22	공공청사 중복결정

-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변경 내용	변경 사유
②	주차장	노외주차장	주차장 면적 증가 및 부지 정형화	기존 주차장을 공공청사와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하고, 추후 시설 신설 및 변경을 고려하여 부지 정형화

4)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

구분	도면 표시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②	공공청사	주민센터	망우동 529-2 외	-	증) 1,862.94	1,862.94	-	주차장 중복결정

- 신설 사유서

도면표시	공공청사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②	망우3동 주민센터	공공청사 신설(1,862.94㎡)	기존 주민센터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

- 건축물의 범위

건폐율(%)	용적률(%)	높이(층 또는 m)
45.19% (건축면적 : 841.77㎡)	150.34% (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: 2,800.78㎡, 전체 연면적 : 3,021.83㎡)	지하 1층 ~ 지상 4층

※ 기존 건축물 유지

5) 사회복지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

구분	도면 표시	시설명	위치	면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③	사회복지시설	망우동 522-1 외	-	증) 205.00	205.00		시립중앙 단기보호센터

※ 기존 시립중앙단기보호센터 부지(시유지)를 이전(대토) 설치하는 것으로 기부채납에 포함되지 않음

※ (사업시행 시 대토 및 시설 설치(기존 시립중앙 단기보호센터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 신설) 관련 협의 필요)

- 신설 사유서

도면표시	공공청사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③	시립중앙 단기보호센터	사회복지시설 신설(205.0㎡)	기존 시립중앙 단기보호센터 이전 설치

- 건축물의 범위

연면적
291.28㎡ 이상

※ 기존 시립중앙 단기보호센터 연면적 이상 설치하고, 초과 설치 면적 및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협의

6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안)

-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55조의 2, 「서울특별시 주택 조례」 제8조의4 기준 이상 설치
- 「2030 서울생활권계획」 면목지역생활권계획 분석결과 주차장, 도서관, 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, 주민의견을 고려한 시설공급 고려 대상은 공원과 주차장, 도서관으로 이에 아래 시설을 권장시설로 계획함
-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안)

구분	세대수	기준면적	설치기준	비고
A-1 (사업추진구역1)	650세대	2,031.25㎡ 이상	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 4(주민공동시설) 100세대 ~ 1,000세대 기준으로 세대당 2.5㎡ X 1.25 이상 설치	구역 내
A-2 (사업추진구역2)	587세대	1,834.38㎡ 이상		
A-3 (사업추진구역3)	525세대	1,640.63㎡ 이상		
A-4 (사업추진구역4)	518세대	1,618.75㎡ 이상		

○ 공동이용시설 권장시설

구분	시설유형	설치기준	비고
권장시설	경로당, 어린이집, 작은 도서관, 놀이터, 공동체육시설, 돌봄센터, 독서실, 서울형 키즈카페 등	- 대상지 정비로 인해 폐지되는 시설의 재확보 우선 고려 - 주변 지역에 부족한 시설을 가로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가로변으로 확보	-

○ 구역별 권장시설

구분	시설유형	비 고
A1	주민교육시설 (독서실, 다목적실 등)	구역 내
A2	노인복지시설 (경로당, 어르신 쉼터 등)	구역 내, 기존 햇님경로당(망우동 474-11) 연면적 이상의 경로당을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로 설치
A3	체육시설 (실내풋살장)	구역 내
A4	사회복지시설 (청소년상담복지센터)	구역 내

라. 교통처리계획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

구분	계획내용	비고
차량진출입 불허구간	• 주요 통학로인 상봉로 16길 및 봉우재로 58길, 용마산로 99길 차량진출입 불허 (망우3동 주민센터 진입을 위한 일부 구간 허용) • 가각부 진출입 제한을 위해 교차로 가각부 15m일부 불허	교차로 가각부, 봉우재로 58길, 용마산로 99길, 상봉로16길 일부 구간
차량진출입구간	•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외 대상지 내 도로를 통해 차량 진출입구 설치 • 겸재로 61길 설치 권장	겸재로61길
도로 확폭	• 사업추진으로 늘어나는 세대수 및 교통량을 고려한 도로 확폭	겸재로 61길(6→11m), 봉우재로 58길(6~8→11m), 용마산로 99길(6→10m), 봉우재로 64길(6→8/14m), 상봉로 12길(6→8m), 겸재로 61가길(4→8m), 상봉로 16길(6→14m)
건축한계선	•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3m/5m를 지정하여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	- 5m : 용마산로99길, 상봉로12길, 겸재로61가길, 봉우재로64길 변 - 3m : 그 외 도로변

※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일 경우, 교통영향평가 필요

마.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

도면 표시	사업구역	위치	면적(㎡)			사업계획		비고 (검인 면적)
			계	공동주택용지	정비기반시설 등	시행자	추진단계	
합 계			85,584.61	68,267.70	17,316.91	-	-	-
A-1	사업추진구역1 (가로주택정비사업)	망우동 477-2 일대	22,203.60	19,048.57	3,155.03	조합 (예정)	동의서 징구중	18,863.27㎡
A-2	사업추진구역2 (가로주택정비사업)	망우동 474-9 일대	22,239.70	17,216.66	5,023.04	조합 (예정)	동의서 징구중	17,501.22㎡
A-3	사업추진구역3 (가로주택정비사업)	망우동 523-1 일대	19,413.85	15,958.98	3,454.87	조합 (예정)	동의서 징구중	16,226.81㎡
A-4	사업추진구역4 (가로주택정비사업)	망우동 520-1 일대	21,727.46	16,043.49	5,683.97	조합 (예정)	동의서 징구중	16,237.64㎡

바. 모아주택 통합계획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

- 건축법 제77조의 4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로 건축법 제77조 13에 따른 특례 적용 계획

도면 표시	사업구역	위치	면적(㎡)	특례 사항	특례 적용 사유	비고
			공동주택용지			
합 계			68,267.70	공통사항 대지안의 조경(제42조), 건폐율(제55조), 용적률(제58조), 건축물의 높이제한(제60조),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(제61조)	공통사항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	-
A-1	사업추진구역1 (가로주택정비사업)	망우동 477-2 일대	19,048.57			
A-2	사업추진구역2 (가로주택정비사업)	망우동 474-9 일대	17,216.66			
A-3	사업추진구역3 (가로주택정비사업)	망우동 523-1 일대	15,958.98			
A-4	사업추진구역4 (가로주택정비사업)	망우동 520-1 일대	16,043.49			

※ 상기의 건축협정에 관한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, 준공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

사. 건폐율·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

구분		내용		비고
시행구역 내	A1 ~ A4	건폐율	50% 이하	A1~A3 : 제2종, 제3종 일반주거지역 → 제3종 일반주거지역, A4 : 제2종 일반주거지역 → 제3종 일반주거지역
		용적률	기준 250% 이하 상한 300% 이하	
		높이	용도지역 층수 적용	
정비 기반시설 등	B1	건폐율	60% 이하	제1종일반주거지역
		용적률	기준 150% 이하	
		높이	용도지역 층수 적용	
	C1, D1	건폐율	60% 이하	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이하)
		용적률	기준 200% 이하	
		높이	용도지역 층수 적용	

※ 모아주택사업 시행 시 건축물의 규모(높이, 밀도 등)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

※ 향후 관련 법령 변경사항(밀도, 높이 등)이 있을 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가능하도록 함

※ 법 제48조 및 제43조의 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 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

아.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용도·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(안)

1) 건축물의 용도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

도면표시	구분		계획내용	비고
A1 ~ A4	유형		• 공동주택 용지	-
	용도	허용	•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• 「주택법」 제2조 13호, 13호에 의한 부대·복리시설 •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」 제44조 공동이용시설	
		불허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
2)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

구분	적용지역	계획 내용	비고
건축한계선	도로변 및 인접대지경계	• 용마산로99길, 상봉로12길, 겸재로61가길, 봉우재로64길 변 5m 적용 • 이외 도로변 및 인접대지경계 3m 적용	
전면공지	가로변	•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확보 • 일체의 보행 방해 장치를 설치할 금지하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	
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	상봉로, 봉우재로, 겸재로	•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가로로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(1층 이상)를 설치하고, 해당 공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•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- 「주택법」 제2조 13,14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-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」 제44조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	

		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유도	
담장 미설치	사업추진구역 1~4	구역간 담장 미설치	
통경축 확보	상봉로 변	- 건축물 배치 계획 시 통경축 확보 - 상봉로 변 경관 및 망우산 조망을 고려하여 배치 유도	

자.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

구분		위치	전체 세대수	임대주택 세대수	임대주택 인수예정자	비고 (임대주택비율)
도면 표시	사업구역					
합 계		-	2,280	510	-	22.4%
A1	사업추진구역1 (가로주택정비사업)	망우동 477-2 일대	650	148	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	22.8%
A2	사업추진구역2 (가로주택정비사업)	망우동 474-9 일대	587	131		22.3%
A3	사업추진구역3 (가로주택정비사업)	망우동 523-1 일대	525	115		21.9%
A4	사업추진구역4 (가로주택정비사업)	망우동 520-1 일대	518	116		22.4%

※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

※ 상기의 세대수,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,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

※ 사업추진구역별 통합심의 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할 것

차. 용도지구 ·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계획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

구분		면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85,584.61	-	85,584.61	100.0	-
주거 지역	제1종일반주거지역	1,577.50	증) 6.52	1,584.02	1.9	-
	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	56,187.15	감) 42,798.52	13,388.63	15.6	-
	제3종일반주거지역	27,819.96	증) 42,792.00	70,611.96	82.5	-

카.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(안)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

- 「건축법」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도시경관,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, 안전한 가로환경 등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
- 「건축법」 제69조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, 「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(국토교통부 훈령 제1445호)」와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지침 (안)_서울특별시」에 준하여 모아주택 사업추진구역 1~4구역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권장

구분	도면표시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특별건축구역	사업추진구역1~4	-	증) 85,584.61	85,584.61	-

※ 상기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시행시기가 동일할 경우 적용 가능

○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적용 배제 또는 완화

※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수립 시 결정

구분	내용
건축법	대지안의 조정(제42조), 건폐율(제55조), 용적률(제56조) 대지안의 공지(제58조), 건축물의 높이제한(제60조),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(제61조) 등
주택법 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)	공동주택의 배치(제10조), 기준척도(제13조), 비상급수시설(제35조), 난방설비 등(제37조) 등
통합적용	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「주차장법」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원의 설치

타.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의 연계 계획

○ 해당없음

파.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계획

○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

- 모아타운의 면적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
- 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
- 관리계획을 법 제43조의3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완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
- 정비기반시설 · 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
- 계산착오 · 오기 ·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

-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
3. 관련도면

- 붙임 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4. 관계도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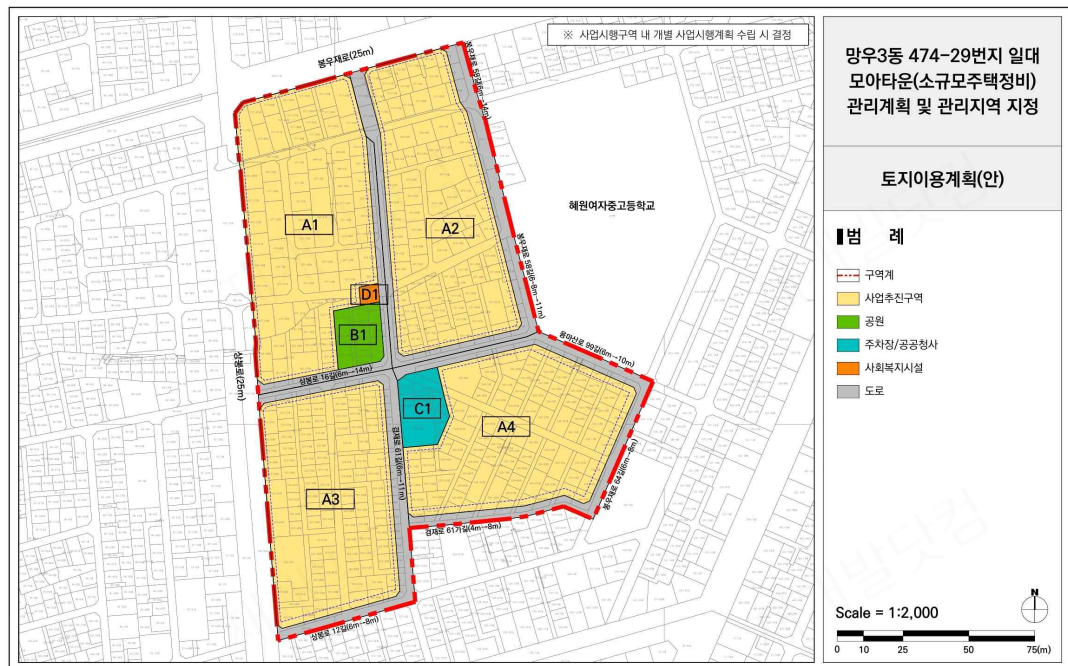
- 서울시 전락주택공급과(☎ 02-2133-8241) 및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(☎ 02-2094-6912)에 비치·열람하고 있습니다.
- 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
- 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(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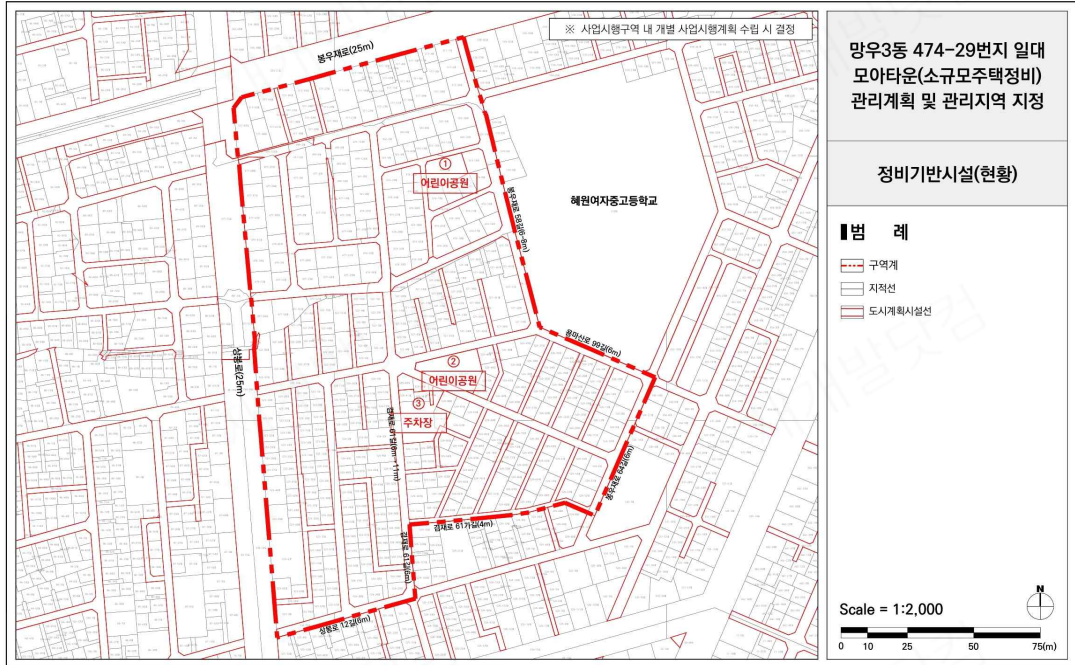
○ 관리지역 결정도(안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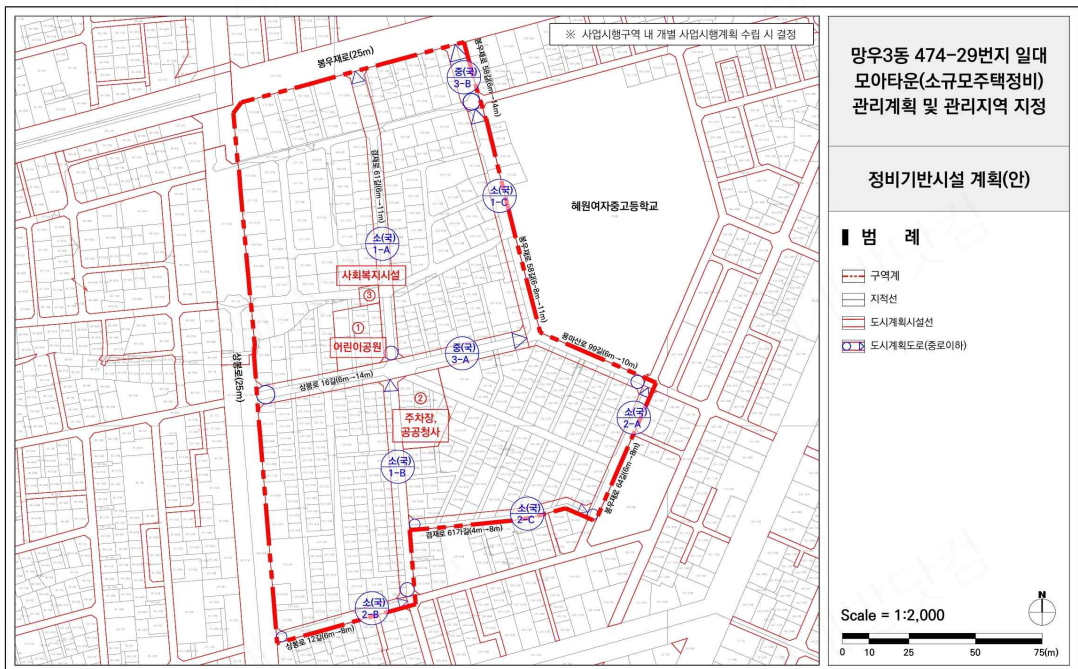
○ 토지이용계획(안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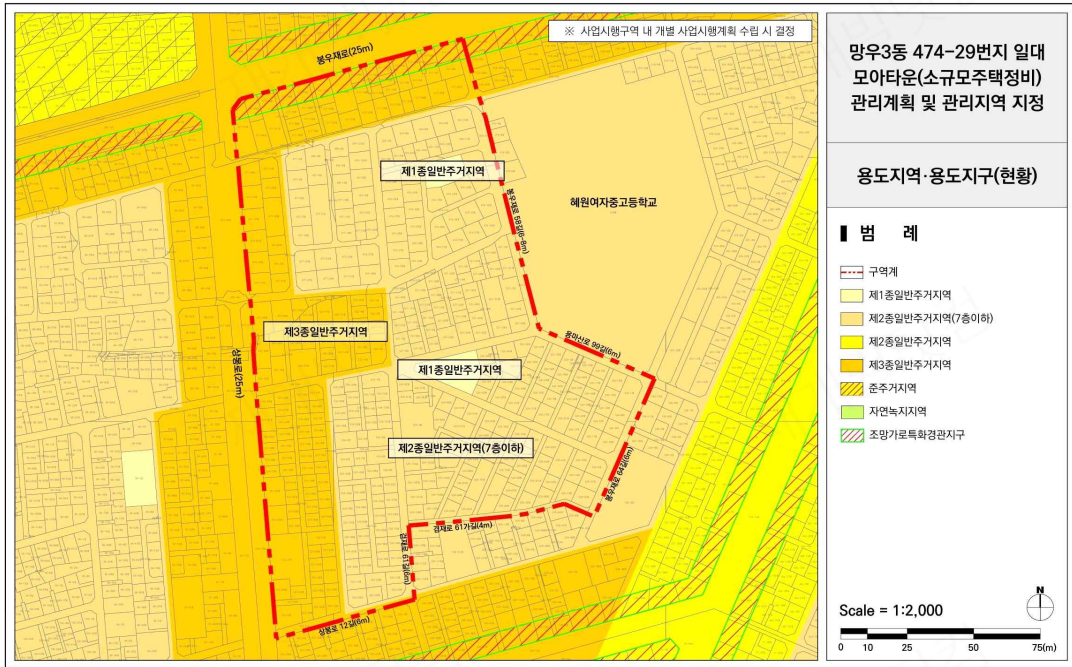
○ 정비기반시설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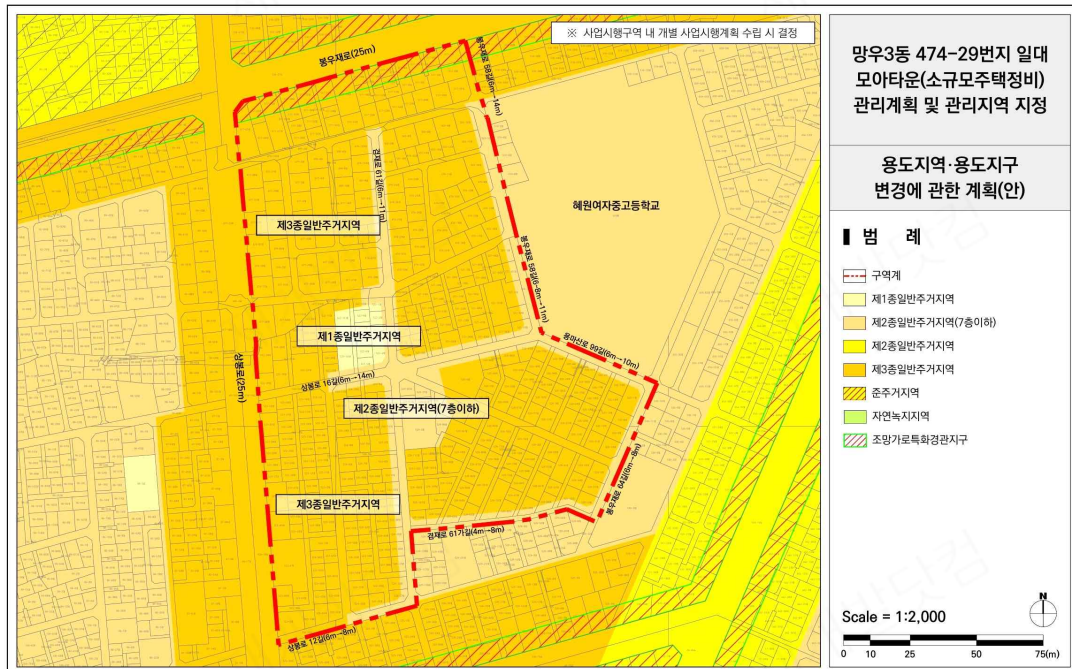
○ 정비기반시설 결정(변경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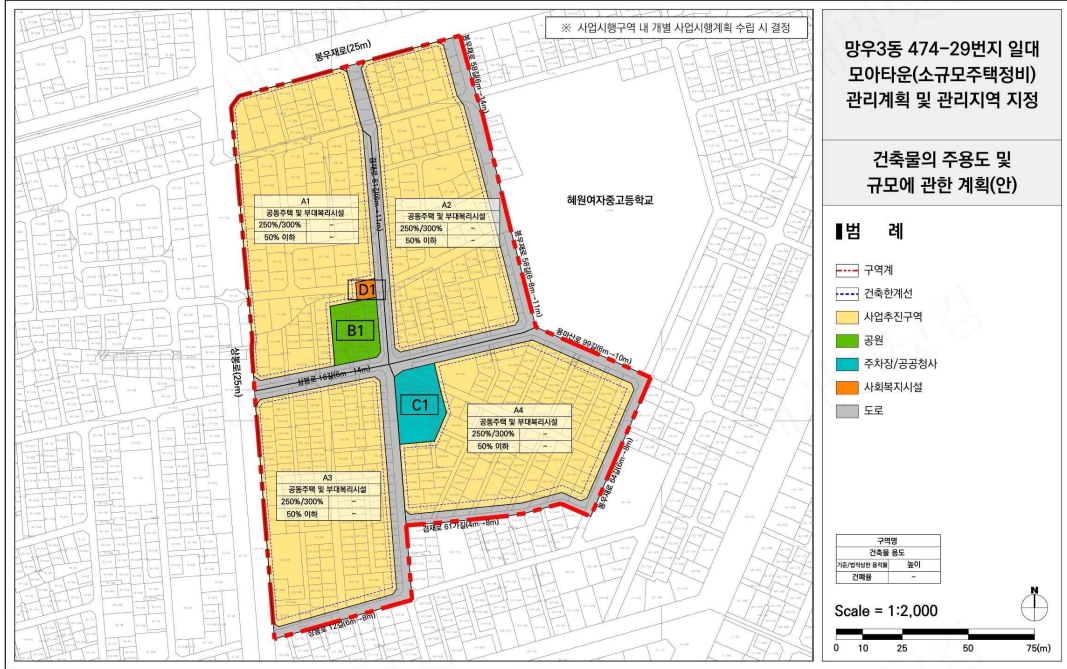
○ 용도지역·용도지구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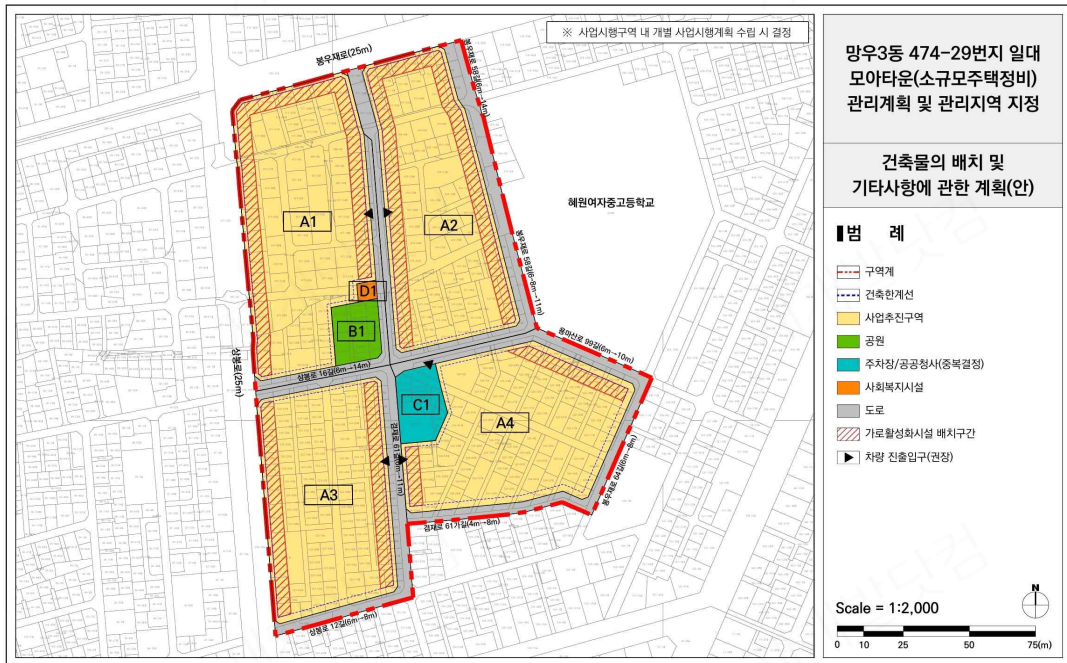
○ 용도지역·용도지구 결정(변경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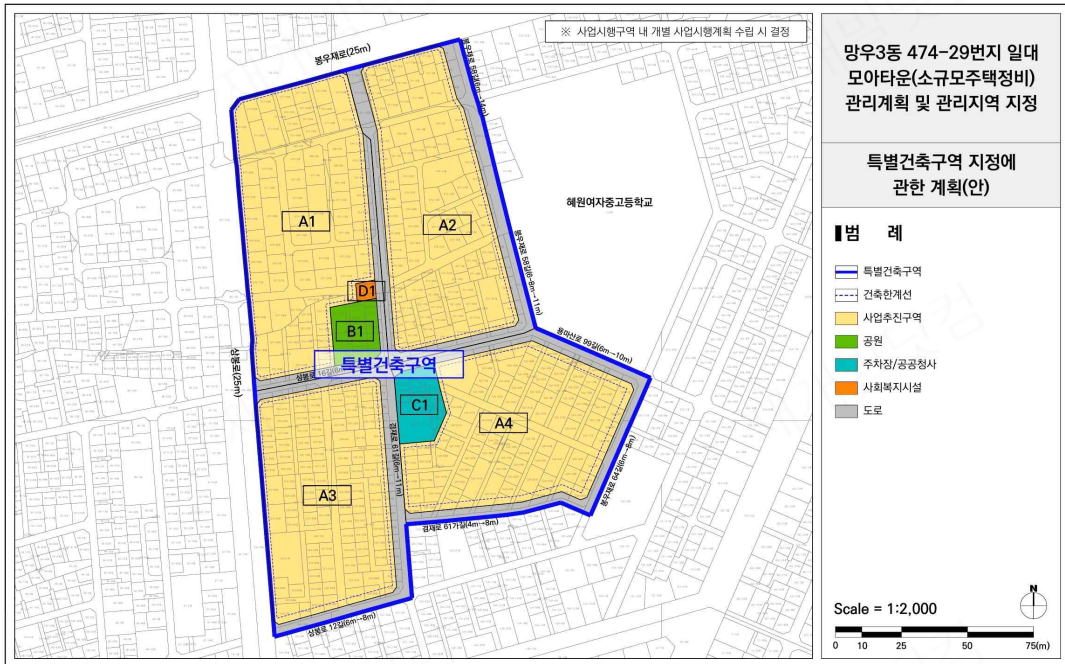
○ 건축물의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(안)



○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(안)



○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(안)



<이하여백>